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8조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2항 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, 나목 “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한 금액” 조문은 사용개시 5일 전(前) 시설사용 취소는 연수원에서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전날 취소에는 “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”고 되어있으나, 이는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래 시설사용자와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8조 제2항 제2호

가목 “사용개시 5일 전 : 전액”을 “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”으로
나목 “사용개시 전날 :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”를 “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제2항의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.

가. 사용개시 5일 전까지 : 사용료 전액

나.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: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